## 35. 요금 징수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여나이53세직종서비스업작업관련성낮음1. 개요: 근로자 진OO은 OO공사 OO 외곽 순환도로 OO 영업소에 근무하던 중 2006. 6월 OO병원에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 받았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진○○은 1998년 3월 25일 OO공사 OO 영업소에 요금 징수원으로 입사하여 2006년 6월 28일까지 OO 영업소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 주 6일 근무를 하다가 2006년 6월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연장 근무를 신청하여 한달에 쉬는 날이 거의 없는 때가 많았다.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의 말에 의하면 외곽 순환도로는 항상 밀려있어서 하루 업무 중에 2,700대에서 많으면 3,200대를 받는다고 하였다. 승용차선은 4번~11번으로 매일 다른 부스로 옮겨서 일을 한다고 하였다. 일주일에 2회는 전용 화물 차 선 부스(1, 2, 3번)에서 일을 했으며 근무는 승용차선에 비해서 여유가 있었으나 매연이 심하고 차가 섰다가 가면 머리가 아팠다고 하였다. OO영업소 요금 징수업무 근로자는 각 부스 안의 개방된 창문 근처에서 근무하는데, 개방된 창문을 통해 외부로부터 차량 배기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 상부 측면의 슬롯을 통해 공기를 제트 형태로 분출하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지만, 근로자는 그 바람으로 근로자 더 외부 공기가들어오는 것 같아 자주 꺼놓았다고 하였다.
- 3. 의학적 소견: 정기 검진은 연 1회 시행하였으며 항상 정상으로 나오다가 2005년 5월에 폐에 이상이 있어 흉부 방사선 재검을 받았고 이후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2006년 5월 25일 다시 검진을 했을 때 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같은 해 6월 13일 CT 촬영 결과 폐암을 진단 받았다. 2006년 6월 19일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7월 3일 수술을 받고 7월 11일 퇴원하였다.

## 4. 결론: 근로자 진OO은

-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고,, 8년 1개월간 고속도로 요금 징수업무를 하면서,
- ②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수준이 아니었고 폐암 등의 고형암 생성 기간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리는 데 비해 근로자 진광숙 의 근무 기간은 8년으로 다소 짧으므로,

근로자 진OO의 원발성 폐암은 과거 8년간 1개월간 고속도로 상에서 종사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